

이 상품요약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무 배 당 든 든 튼 튼 치 매 보 험  
( 해 지 환 급 금 5 0 % 지 급 형 )  
상 품 요 약 서

이 상품요약서는 무배당 든든 튼튼 치매보험 (해지환급금 50% 지급형)의 보험약관 등의 기초서류에 기재된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보험약관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상품의 특이사항

무배당 든든 튼튼 치매보험 (해지환급금 50%지급형)의 특이사항은 무엇인가요?

- 무배당 든든 튼튼 치매보험 (해지환급금 50%지급형)은 중증치매 진단후 생존시 매월 생활자금을 추가로 보장받거나 중증치매 진단시 진단급여금을 일시금으로 추가로 보장받을 수 있으며, 특약을 통해 치매 중증도에 따라 경도·중등도·중증치매 진단을 보장받을 수 있는 치매보험입니다.
- 무배당 든든 튼튼 치매보험 (해지환급금 50%지급형)은 1형(간편심사형)과 2형(일반심사형)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 이 상품의 1형(간편심사형)은 “간편심사” 상품으로 유병력자 또는 연령제한 등 이 상품의 2형(일반심사형)과 같은 유사한 일반심사상품에 가입하기 어려운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간편심사상품은 일반심사상품 대비 보험료가 할증되어 있습니다. 의사의 건강검진을 받거나 일반계약심사를 받을 경우 간편심사상품보다 저렴한 일반심사상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심사상품의 경우 건강상태나 가입나이에 따라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보장하는 담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증치매상태”란 무엇인가요?

- “중증치매상태”라 함은 피보험자가 계약일 이후에 발생한 재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의 인지기능의 장애”가 발생한 상태를 말합니다. 다만, “정신분열병이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및 “알콜중독,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는 약물의 투여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는 보장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중증의 인지기능의 장애”라 함은 CDR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2001년) 검사 결과가 3점 이상(다만, 이와 동등하다고 국내 의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 방법을 사용하여 이와 동등한 정도로 판정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 해당되는 상태로서 그 상태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발생하고 발생시점으로부터 90일 이상 계속되어 장애에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 “중증치매상태”의 진단확정은 치매 전문의(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의 진단서에 의하고, 이 진단은 병력청취, 인지기능 및 정신상태 평가, 신체진찰과 신경계진찰, 신경심리검사, 일상생활능력평가, 검사실검사, 뇌영상검사 등 해당 치매의 진단 및 원인질환 감별을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그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정해지며, 뇌영상검사 등 일부 검사에서 치매의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검사에 의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치매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진단일부터 90일이 경과된 이후에 회사가 피보험자의 “중증치매상태”가 계속 지속되었음을 확인함으로써 “중증치매상태”로 최종 진단확정 됩니다.

“CDR척도”란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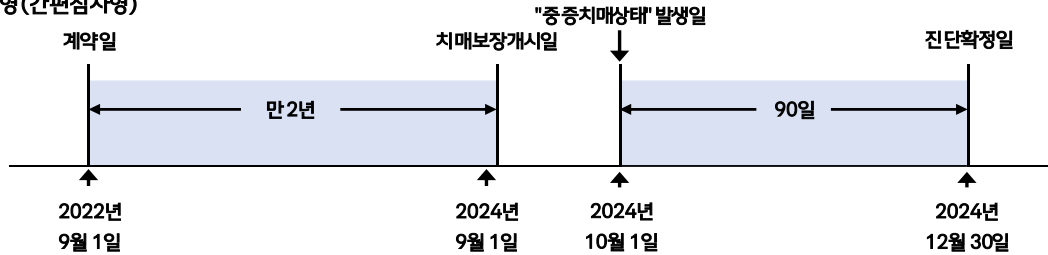
- CDR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2001년)는 치매관련 전문의가 실시하는 전반적인 인지기능 및 사회기능 정도를 측정하는 검사로서 전체 점수 구성은 0, 0.5, 1, 2, 3, 4, 5의 7등급으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중증을 의미합니다.

“치매보장개시일”이란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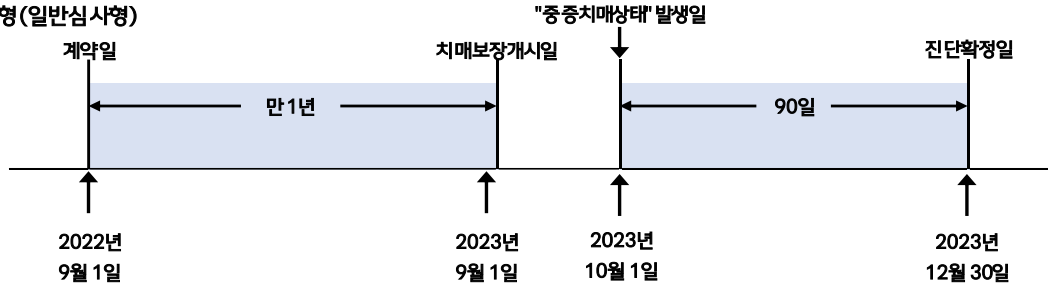
- “중증치매상태”의 보장이 개시되는 날로,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형(간편심사형)의 경우 만 2년, 2형(일반심사형)의 경우 만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질병이 없는 상태에서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중증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을 치매보장개시일로 합니다.

“중증치매상태”의 보장개시 및 진단확정 [예시]

1형(간편심사형)



2형(일반심사형)



※ 치매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형(간편심사형)의 경우 만 2년, 2형(일반심사형)의 경우 만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또한, 질병이 없는 상태에서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중증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 치매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하며, 부활(효력회복)계약의 치매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을 치매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무배당 든든 든든 치매보험 (해지환급금 50%지급형)에서 “해지환급금 50%지급형”은 무엇인가요?

- “해지환급금 50%지급” 상품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표준형” 상품의 해지환급금 대비 적은 해지환급금을 지급하는 대신, “표준형” 상품보다 낮은 보험료로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상품입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지환급금은 “표준형” 상품과 같습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이란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기간(년수)이 경과한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를 말합니다.
- “표준형” 상품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도 해지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는 상품으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납입기간 중 해지(율)을 반영하지 않고 산출되었으며, 본 상품과 동일한 보장 내용의 비교·안내만을 위한 상품입니다.
- “해지환급금 50%지급” 상품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표준형” 상품과 비교·안내하여 드립니다.

무배당 든든 든든 치매보험 (해지환급금 50%지급형)에서 “해지환급금 50%지급형”은 무엇인가요?

(예시)

[기준: 남자 40세, 90세만기, 20년납, 월납, 주계약 40구좌]

**1형 (간편심사형)**

(1) 납입보험료 비교

(단위: 원)

보험종류	해지환급금 50%지급형	표준형
무배당 든든 든든 치매보험 (해지환급금 50%지급형)	76,600	92,560
합계보험료	76,600	92,560

(2) 해지환급금 및 해지환급률 비교

(단위: 원)

보험종류	해지환급금 50%지급			표준형		
	납입보험료 누계액	해지환급금	해지환급률	납입보험료 누계액	해지환급금	해지환급률
1년	919,200	67,020	7.2%	1,110,720	134,040	12.0%
2년	1,838,400	418,900	22.7%	2,221,440	837,800	37.7%
3년	2,757,600	777,780	28.2%	3,332,160	1,555,560	46.6%
5년	4,596,000	1,517,980	33.0%	5,553,600	3,035,960	54.6%
10년	9,192,000	3,395,820	36.9%	11,107,200	6,791,640	61.1%
15년	13,788,000	5,445,700	39.4%	16,660,800	10,891,400	65.3%
19년	17,464,800	7,321,360	41.9%	21,103,680	14,642,720	69.3%
20년	18,384,000	15,657,520	85.1%	22,214,400	15,657,520	70.4%
30년	18,384,000	20,811,920	113.2%	22,214,400	20,811,920	93.6%
40년	18,384,000	28,782,280	156.5%	22,214,400	28,782,280	129.5%
50년	18,384,000	0	0.0%	22,214,400	0	0.0%

- ※ 상기 해지환급률은 납입보험료누계액 대비 해지환급금의 비율입니다.
- ※ 상기 해지환급금은 각 해당연도 말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 ※ 상기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납입을 정상적으로 하였을 경우 경과기간별 계약해당일 기준 금액입니다.
- ※ 상기 해지환급금은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의 해지환급금이며,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이 발생한 경우의 해지환급금은 상기 금액과 달라집니다.
-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무배당 든든 든든 치매보험 (해지환급금 50%지급형)에서 “해지환급금 50%지급형”은 무엇인가요?

## 2형 (일반심사형)

### (1) 납입보험료 비교

(단위: 원)

보험종류	해지환급금 50%지급형	표준형
무배당 든든 든든 치매보험 (해지환급금 50%지급형)	69,920	84,440
합계보험료	69,920	84,440

### (2) 해지환급금 및 해지환급률 비교

(단위: 원)

보험종류	해지환급금 50%지급			표준형		
	납입보험료 누계액	해지환급금	해지환급률	납입보험료 누계액	해지환급금	해지환급률
1년	839,040	61,200	7.2%	1,013,280	122,400	12.0%
2년	1,678,080	381,980	22.7%	2,026,560	763,960	37.6%
3년	2,517,120	709,340	28.1%	3,039,840	1,418,680	46.6%
5년	4,195,200	1,384,520	33.0%	5,066,400	2,769,040	54.6%
10년	8,390,400	3,095,400	36.8%	10,132,800	6,190,800	61.0%
15년	12,585,600	4,954,860	39.3%	15,199,200	9,909,720	65.1%
19년	15,941,760	6,633,600	41.6%	19,252,320	13,267,200	68.9%
20년	16,780,800	14,165,240	84.4%	20,265,600	14,165,240	69.8%
30년	16,780,800	18,319,440	109.1%	20,265,600	18,319,440	90.3%
40년	16,780,800	24,067,720	143.4%	20,265,600	24,067,720	118.7%
50년	16,780,800	0	0.0%	20,265,600	0	0.0%

- ※ 상기 해지환급률은 납입보험료누계액 대비 해지환급금의 비율입니다.
- ※ 상기 해지환급금은 각 해당연도 말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 ※ 상기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납입을 정상적으로 하였을 경우 경과기간별 계약해당 일 기준 금액입니다.
- ※ 상기 해지환급금은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의 해지환급금이며,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이 발생한 경우의 해지환급금은 상기 금액과 달라집니다.
-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AIA 헬스케어 서비스」란 무엇인가요?

「AIA 헬스케어 서비스」는 건강관리, 치료지원, 질병관리교육, 가족지원 등 토탈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회사가 정한 서비스 부가 기준을 충족하고 「AIA 헬스케어 서비스 신청서(개인 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제출한 피보험자에게 AIA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AIA 헬스케어 서비스는 회사의 제휴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서비스에 대한 책임은 제휴사에 있으며, 대외환경 변화로 인해 향후 서비스 내용 및 제공방법이 변경되거나 중지될 수 있습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나요?

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경우 보호되지 않습니다.

◆ 일반심사상품과의 비교

이 상품의 1형(간편심사형)은 “간편심사” 상품으로 유병력자 또는 연령제한 등 이 상품의 2형(일반심사형)과 같은 유사한 일반심사상품에 가입하기 어려운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간편심사상품은 일반심사상품 대비 보험료가 할증되어 있습니다. 의사의 건강검진을 받거나 일반계약심사를 할 경우 간편심사상품보다 저렴한 일반심사상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심사상품의 경우 건강상태나 가입나이에 따라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보장하는 담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품구분	1형 (간편심사형)			2형 (일반심사형)		
보장내용	<p><b>-주계약 40구좌:</b> 중증치매 진단급여금 1,000만원 (치매보장개시일 이후 보장)</p> <p>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 매월 200만원 (매년 진단확정일에 살아있을 경우 해당 연도에 대하여 12개월 확정지급, 최대 종신지급, 치매보장개시일 이후 보장)</p> <p><b>-무배당 안심치매 진단특약 10구좌:</b> 경도치매 진단급여금 200만원</p> <p>중등도치매 진단급여금 500만원 (경도치매 진단급여금이 지급된 후에 중등도치매로 진단시 상기금액에서 경도치매 진단급여금을 뺀 차액지급)</p> <p>중증치매 진단급여금 2,000만원 (경도치매 진단급여금 또는 중등도치매 진단급여금이 지급된 후에 중증치매로 진단시 상기 금액에서 이미 지급받은 보험금의 총 합계약을 뺀 금액지급)</p> <p>(각 진단급여금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 보장)</p>			<p><b>-주계약 40구좌:</b> 중증치매 진단급여금 1,000만원 (치매보장개시일 이후 보장)</p> <p>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 매월 200만원 (매년 진단확정일에 살아있을 경우 해당 연도에 대하여 12개월 확정지급, 최대 종신지급, 치매보장개시일 이후 보장)</p> <p><b>-무배당 안심치매 진단특약 10구좌:</b> 경도치매 진단급여금 200만원</p> <p>중등도치매 진단급여금 500만원 (경도치매 진단급여금이 지급된 후에 중등도치매로 진단시 상기금액에서 경도치매 진단급여금을 뺀 차액지급)</p> <p>중증치매 진단급여금 2,000만원 (경도치매 진단급여금 또는 중등도치매 진단급여금이 지급된 후에 중증치매로 진단시 상기 금액에서 이미 지급받은 보험금의 총 합계약을 뺀 금액지급)</p> <p>(각 진단급여금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 보장)</p>		
계약 승낙 여부	일반심사상품 대비 질문항목(고지)을 간소화하여 인수기준을 완화하여, 지병이나 기왕력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및 직업에 따라서 청약에 대한 승낙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예시 (보장내용과 기준 동일)	나이	남자	여자	나이	남자	여자
	40세	97,200원	133,560원	40세	89,590원	122,260원
	50세	126,520원	170,090원	50세	115,200원	154,670원
	60세	177,410원	224,050원	60세	156,410원	200,880원
	70세	327,140원	346,850원	70세	269,790원	301,360원
	기준: [90세 만기, 20년납, 월납] - 주계약 40구좌 - 무배당 안심치매 진단특약 10구좌			기준: [90세 만기, 20년납, 월납] - 주계약 40구좌 - 무배당 안심치매 진단특약 10구좌		

◆ 보험가입자격요건

1. 보험의 종류

보험종목의 명칭		보험의 세목
무배당 든든 튼튼 치매보험 (해지환급금 50%지급형)	1형(간편심사형)	순수보장형
	2형(일반심사형)	

2.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가입나이 및 보험료 납입주기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가입나이	보험료 납입주기
90세 만기	20년납	40세~70세	월납, 2개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30년납	40세~60세	

※ 다만, 피보험자에게 이 계약의 약관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기간은 최대 종신으로 합니다.

3. 가입한도

주계약의 가입한도(구좌 기준)는 6~40구좌입니다.  
 (다만, 가입나이가 50세 이하인 경우의 가입한도(구좌 기준)는 10~40구좌입니다)  
 주계약 1구좌는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 50,000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4. 건강진단 여부

무배당 든든 튼튼 치매보험 (해지환급금 50%지급형)의 경우 기존 다른 보험상품의 가입유무, 피보험자의 나이, 청약서 상의 계약전 알릴 의무 사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시행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보험가입 가능여부를 판정할 수 있습니다.



## ◆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제한사항

### 1. 상품의 구성

- 주계약: 무배당 든든 튼튼 치매보험 (해지환급금 50%지급형) 1형 (간편심사형)

- + 무배당 안심 치매진단특약 1형 (간편심사형) (선택특약)
- +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제도성특약)
- +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제도성특약)

- 주계약: 무배당 든든 튼튼 치매보험 (해지환급금 50%지급형) 2형 (일반심사형)

- + 무배당 안심 치매진단특약 2형 (일반심사형) (선택특약)
- + 특정 신체부위·질병 보장제한부인수특약 (제도성특약)
- +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제도성특약)
- +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제도성특약)

※ 특약의 경우,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가입나이, 보험료 납입주기, 가입한도, 부가가능여부 등의 계약인수 관련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 2. 보험금 지급사유

다음은 보험금 지급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주계약

(기준: 10구좌)

지급명칭	지 급 사 유	지 급 액
중증치매 진단급여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치매상태”로 최종 진단확정된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250만원
중증치매간병 생활자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치매상태”로 최종 진단 확정되고, 중증치매진단확정일을 최초로 하여 매년 중증치매진단확정일에 살아있을 경우,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 보증지급기간[3년(36개월)] 동안은 생존에 관계없이 보증지급하고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 보증지급기간 이후에는 매년 중증치매진단확정일에 생존시 해당 연도에 대하여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을 12개월동안 매월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 지급해당일에 확정지급합니다. (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며, 종신까지 최고한도로 지급)	매월 50만원

※ 치매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형(간편심

사형)의 경우 만 2년, 2형(일반심사형)의 경우 만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또한, 질병이 없는 상태에서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중증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 치매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하며, 부활(효력회복)계약의 치매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을 치매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 “중증치매상태”의 진단확정은 치매 전문의(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의 진단서에 의하고, 이 진단은 병력청취, 인지기능 및 정신상태 평가, 신체진찰과 신경계진찰, 신경심리검사, 일상생활능력평가, 검사실검사, 뇌영상검사 등 해당 치매의 진단 및 원인질환 감별을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그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정해지며, 뇌영상검사 등 일부 검사에서 치매의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검사에 의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치매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 진단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회사가 피보험자의 “중증치매상태”가 계속 지속되었음을 확인함으로써 “중증치매상태”로 최종 진단확정 됩니다.
- ※ 중증치매진단확정일은 “중증치매상태”로 최종 진단 확정된 날을 말합니다.
- ※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 지급해당일은 매년 중증치매진단확정일에 살아있을 경우 해당 연도에 대하여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을 12개월동안 확정지급하는 매월 해당일을 말합니다.
- ※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 보증지급기간은 “중증치매상태”로 최종 진단 확정된 날부터 만 3년이내를 말하며, 이 기간 동안에는 피보험자의 생존여부에 관계없이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36개월분의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은 지급이 보증됩니다.
- ※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 보증지급기간 중 지급되지 않은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 또는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 보증지급기간 이후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의 해당 연도의 12개월 확정지급금액 중 지급되지 않은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을 보험수익자가 일시금으로 선지급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평균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과 “보험료적용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 ※ 피보험자가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 보증지급기간내에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을 수령 중 사망한 경우에는 회사는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 보증지급기간 중 지급되지 않은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을 “평균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과 “보험료적용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 ※ 피보험자가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 보증지급기간이 지난 후 생존하여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을 수령 중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12개월 확정지급금액 중 지급되지 않은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을 “평균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과 “보험료적용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 ※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중증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을 무효로 하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다만, 치매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CDR척도 3점 이상을 최초 진단받고,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형(간편심사형)의 경우 만 2년, 2형(일반심사형)의 경우 만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에 90일이 지속되어 치매보장개시일 이후 “중증치매상태”로 최종 진단확정된 경우를 포함합니다)
- ※ 피보험자가 이 계약의 보험기간 중 “중증치매상태”로 진단 확정된 경우, 이 계약의 보험기간은 “중증치매상태”로 진단 확정된 그날부터 종신으로 합니다.
-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2) 무배당 안심 치매진단특약

(기준: 10구좌)

지급명칭	지 급 사 유	지 급 액
경도치매 진단급여금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치매 보장개시일 이후에 “경도치매상태”로 최종 진단확정된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200만원
중등도치매 진단급여금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치매 보장개시일 이후에 “중등도치매상태”로 최종 진단확정된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500만원 (다만, 경도치매 진단급여금이 지급된 후에 중등도치매로 최종 진단확정시 상기 금액에서 경도치매 진단급여금을 뺀 차액을 지급)
중증치매 진단급여금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치매 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치매상태”로 최종 진단확정된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2,000만원 (다만, 경도치매 진단급여금 또는 중등도치매 진단급여금이 지급된 후에 중증치매로 최종 진단확정시 상기 금액에서 이미 지급받은 보험금의 총 합계액을 뺀 차액을 지급)

- ※ 치매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형(간편심사형)의 경우 만 2년, 2형(일반심사형)의 경우 만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질병이 없는 상태에서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경도치매상태”, “중등도치매상태” 및 “중증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을 치매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 “경도치매상태”, “중등도치매상태” 및 “중증치매상태”의 진단확정은 치매 전문의(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의 진단서에 의하고, 이 진단은 병력청취, 인지기능 및 정신상태 평가, 신체진찰과 신경계진찰, 신경심리검사, 일상생활 능력평가, 검사실검사, 뇌영상검사 등 해당 치매의 진단 및 원인질환 감별을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그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정해지며, 뇌영상검사 등 일부 검사에서 치매의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검사에 의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치매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진단일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회사가 피보험자의 “경도치매상태”, “중등도치매상태” 및 “중증치매상태”가 계속 지속되었음을 확인함으로써 최종 진단확정 됩니다.
- ※ “경도치매상태”, “중등도치매상태”, 및 “중증치매상태”라 함은 피보험자가 계약일 이후에 발생한 재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경도의 인지기능의 장애”, “중등도의 인지기능의 장애” 및 “중증의 인지기능의 장애”가 발생한 상태를 말합니다. 다만, “정신분열병이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및 “알콜중독,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는 약물의 투여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는 보장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 “경도의 인지기능의 장애”라 함은 CDR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2001년) 검사 결과가 1점(다만, 이와 동등하다고 국내 의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 방법을 사용하여 이와 동등한 정도로 판정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 해당되는 상태로서 그 상태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발생하고 발생시점부터 90일 이상 계속되어 장래에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 ※ “중등도의 인지기능의 장애”라 함은 CDR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2001년) 검사 결과가 2점(다만, 이와 동등하다고 국내 의학

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 방법을 사용하여 이와 동등한 정도로 판정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 해당되는 상태로서 그 상태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발생하고 발생시점부터 90일 이상 계속되어 장래에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 ※ “중증의 인지기능의 장애”라 함은 CDR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2001년) 검사 결과가 3점 이상(다만, 이와 동등하다고 국내 의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 방법을 사용하여 이와 동등한 정도로 판정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 해당되는 상태로서 그 상태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발생하고 발생시점부터 90일 이상 계속되어 장래에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 ※ CDR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2001년)는 치매관련 전문의가 실시하는 전반적인 인지기능 및 사회기능 정도를 측정하는 검사로서 전체 점수 구성은 0, 0.5, 1, 2, 3, 4, 5의 7등급으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 수록 중증을 의미합니다.
- ※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경도치매상태”, “중등도치매상태” 또는 “중증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특약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다만, 치매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CDR척도 1점 이상을 최초 진단받고,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형(간편심사형)의 경우 만 2년, 2형(일반심사형)의 경우 만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에 90일이 지속되어 치매보장개시일 이후 “경도치매상태”, “중등도치매상태” 또는 “중증치매상태”로 최종 진단확정된 경우를 포함합니다)
- ※ 경도치매 진단급여금이 지급된 후에 중등도치매 진단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등도치매 진단급여금에서 경도치매 진단급여금을 뺀 차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또한 중등도치매 진단급여금이 지급된 후에 경도치매 진단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도치매 진단급여금은 추가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 ※ 경도치매 진단급여금 또는 중등도치매 진단급여금이 지급된 후에 중증치매 진단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증치매 진단급여금에서 이미 지급 받은 보험금의 총 합계액을 뺀 차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또한 중증치매 진단급여금이 지급된 후에 경도치매 진단급여금 또는 중등도치매 진단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경도치매 진단급여금 또는 중등도치매 진단급여금은 추가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 ※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3) 특정 신체부위·질병 보장제한부인수특약 [2형(일반심사형)에 한함]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가 회사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또는 주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등으로 보장을 제한할 경우 피보험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특약면책조건을 부가하고, 특약 면책기간 중 약관에서 지정한 각호의 특정 신체부위 또는 특정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이 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망하여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특약을 부가할 때에는 부담보 설정범위 및 사유를 계약자에게 설명하여 드립니다.

(4)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보험금 대리청구인 제도란, 보험사고(예: 치매 등) 발생으로 본인 스스로 보험금

청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대신 청구하는 자(보험금 대리청구인)를 보험가입초기 또는 유지 중에 미리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보험계약은 질병(치매 등)이나 상해 등의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가입자 등이 보험금을 청구해야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품의 특징으로 인해 계약자가 본인을 위한(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인식불명 등으로 본인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 중 본인을 위한 계약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수익자」의 경우 보험회사에 대리청구인 지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5)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보험계약이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장애인전용보험전환을 청약할 수 있으며, 전환 이후 납입보험료에 대해 소득세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약관」을 참조 바랍니다.

1.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제1항제2호」에 따라 보험료가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보험

2.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장애인의 범위)제1항」에서 규정한 장애인인 보험

### 3. 일반적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1) 계약전 알릴의무 및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시 불이익 사항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장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다만, 의사능력이 있는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함
-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님

(3) 사기 등에 의한 보험계약 체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4) 보험금 부지급 사유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드리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보험료 산출기초 및 적용이율

### 1. 적용이율에 관한 사항

적용이율이란, 보험료를 납입하는 시점과 보험금 지급사이에는 시차가 발생하므로 이 기간 동안 기대되는 수익을 미리 예상하여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데, 이 할인을 적용이율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적용이율이 높으면 보험료는 내려가고, 낮아지면 보험료는 올라갑니다.

무배당 든든 든든 치매보험 (해지환급금 50%지급형)의 보험료 산출에 적용되는 이율은 연복리 2.25%입니다.

### 2. 적용위험률에 관한 사항

적용위험률이란, 한 개인이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등의 일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확률을 예측한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적용위험률이 높으면 보험료가 올라가고, 낮으면 보험료는 내려갑니다.

구분	간편심사 중증 치매 발생률	
	남자	여자
40세	0.000003	0.000010
50세	0.000016	0.000054
60세	0.000130	0.000300

구분	중증 치매 발생률	
	남자	여자
40세	0.000002	0.000008
50세	0.000012	0.000045
60세	0.000097	0.000244

구분	중증 치매 유병자 사망률	
	남자	여자
40세	0.037908	0.020067
50세	0.048716	0.025166
60세	0.067120	0.033431

### 3. 적용해지율에 관한 사항

적용해지율이란, 한 개인이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확률을 예측한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적용해지율이 높으면 보험료는 내려가고, 낮으면 보험료는 올라갑니다. 무배당 든든 튼튼 치매보험 (해지환급금 50%지급형)의 보험료 산출에 적용되는 해지율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연 4%입니다.

### 4.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에 관한 사항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이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체결, 유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험료 중 일정비율을 책정한 것을 말합니다.

### ◆ 계약자 배당에 관한 사항

계약자배당이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로 보험회사가 합리적인 경영을 하여 발생한 이익금을 금융감독원장이 인가하는 방식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환원하여 드리는 것을 말하며, 또 그 종류에는 이자율차배당, 위험률차배당, 사업비차배당, 장기유지특별배당이 있습니다.

계약자 배당은 배당상품에 한하여 실시하며, 무배당 상품은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배당 상품은 배당상품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무배당 무배당 든든 튼튼 치매보험 (해지환급금 50%지급형)은 무배당 상품으로서 계약자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 ◆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우리 AIA생명에는 보험료 계산시 적용한 위험률로 산출한 순보험료식 책임준비금에서 미상각신계약비(해지공제액)를 공제한 금액을 해지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하는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 해지환급금 예시

(1) 1형 (간편심사형)

기준: 주계약 40구좌, 90세만기, 20년납, 월납, 40세 (단위: 원)

구분 경과기간	남자			여자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3개월	229,800	0	0.00%	339,120	0	0.0%
6개월	459,600	0	0.00%	678,240	0	0.0%
9개월	689,400	0	0.00%	1,017,360	0	0.0%
1년	919,200	67,020	7.2%	1,356,480	99,140	7.3%
2년	1,838,400	418,900	22.7%	2,712,960	617,380	22.7%

구분 경과기간	남자			여자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3년	2,757,600	777,780	28.2%	4,069,440	1,144,100	28.1%
5년	4,596,000	1,517,980	33.0%	6,782,400	2,227,820	32.8%
10년	9,192,000	3,395,820	36.9%	13,564,800	4,957,280	36.5%
15년	13,788,000	5,445,700	39.4%	20,347,200	7,872,280	38.6%
19년	17,464,800	7,321,360	41.9%	25,773,120	10,436,360	40.4%
20년	18,384,000	15,657,520	85.1%	27,129,600	22,220,640	81.9%
30년	18,384,000	20,811,920	113.2%	27,129,600	26,924,160	99.2%
40년	18,384,000	28,782,280	156.5%	27,129,600	28,808,360	106.1%
50년	18,384,000	0	0.0%	27,129,600	0	0.0%

(2) 2형 (일반심사형)

기준: 주계약 40구좌, 90세만기, 20년납, 월납, 40세 (단위: 원)

구분 경과기간	남자			여자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3개월	209,760	0	0.00%	309,120	0	0.0%
6개월	419,520	0	0.00%	618,240	0	0.0%
9개월	629,280	0	0.00%	927,360	0	0.0%
1년	839,040	61,200	7.2%	1,236,480	90,400	7.3%
2년	1,678,080	381,980	22.7%	2,472,960	561,020	22.6%
3년	2,517,120	709,340	28.1%	3,709,440	1,040,340	28.0%
5년	4,195,200	1,384,520	33.0%	6,182,400	2,027,720	32.7%
10년	8,390,400	3,095,400	36.8%	12,364,800	4,511,860	36.4%
15년	12,585,600	4,954,860	39.3%	18,547,200	7,157,540	38.5%
19년	15,941,760	6,633,600	41.6%	23,493,120	9,473,740	40.3%
20년	16,780,800	14,165,240	84.4%	24,729,600	20,160,560	81.5%
30년	16,780,800	18,319,440	109.1%	24,729,600	24,189,320	97.8%
40년	16,780,800	24,067,720	143.4%	24,729,600	25,276,640	102.2%
50년	16,780,800	0	0.0%	24,729,600	0	0.0%

※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하는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약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 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상기 해지환급금은 각 해당연도 말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 상기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납입을 정상적으로 하였을 경우 경과기간별 계약해당일 기준 금액입니다.

※ 상기 해지환급금은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의 해지환급금이며,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이 발생한 경우의 해지환급금은 상기 금액과 달라집니다.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보험가격지수

보험가격지수란?
해당상품의 보험료총액(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험료 및 보험회사의 사업경비 등을 위한 보험료)을 참조순보험료 총액*과 평균사업비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보험가격지수”라고 합니다.
*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평균공시이율) 및 참조순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험료 ** 상품군별 생명보험상품 전체의 평균 사업비율을 반영하여 계산(역산)한 값

(기준: 남자/여자, 40세)

상품명	보험기간	납입기간	보험가격지수		가입금액
무배당 든든 튼튼 치매보험 (해지환급금 50%지급형) 1형(간편심사형)	90세	20년	남자	141.2%	40구좌 [중증치매진단급여금 1,000만원 기준]
			여자	144.2%	
무배당 든든 튼튼 치매보험 (해지환급금 50%지급형) 2형(일반심사형)	90세	20년	남자	133.1%	
			여자	133.3%	

※ 무심사보험, 간편심사보험 및 유병자보험 등 상품자체가 비표준체 대상 상품의 경우, 표준체상품 대비 보험가격지수가 높을 수 있습니다.